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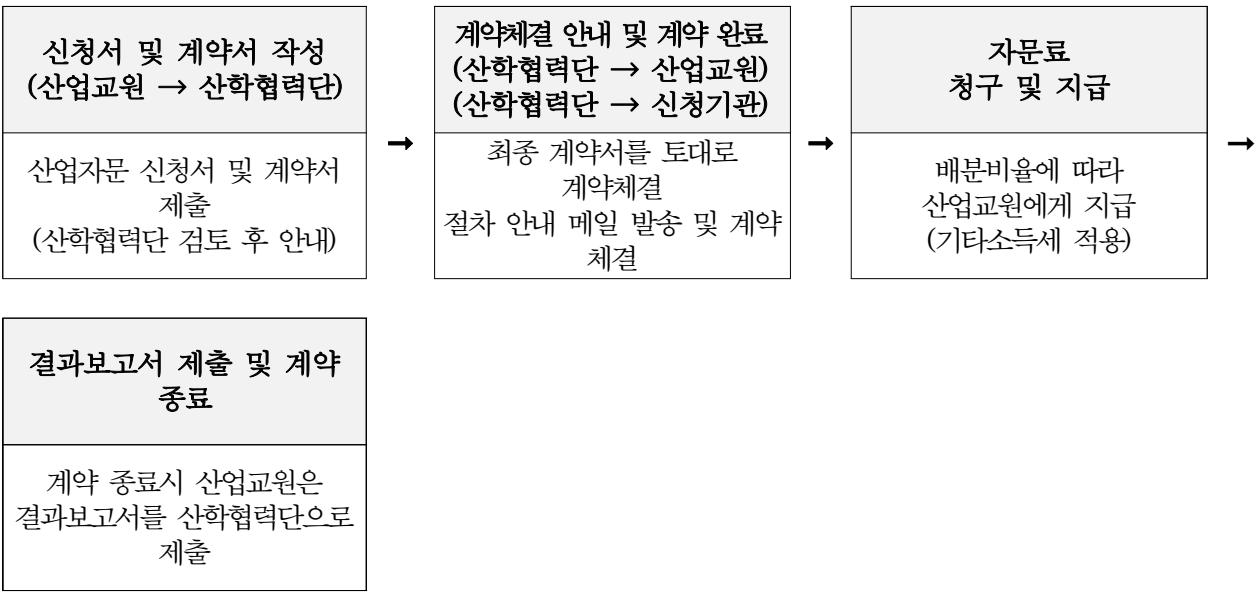
<h1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: 0;">25</h1>	<h2 style="font-size: 1.5em; margin: 0;">산업자문</h2>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관 : 산학협력단 <input type="checkbox"/> 주무 : 특허기술팀
--	--	--

### 1. 업무개요

- 목적 : 한국교통대학교 연구 성과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 -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(이하 ‘지식재산권 규정’ 이라 함)
  - 한국교통대학교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(이하 ‘시행지침’ 이라 함)
- 관련부서 : 전 부서

## 2. 업무흐름도

### ■ 산업자문 업무



※ 산업교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

### 3. 주요내용

#### ■ 산업자문 정의 및 분류

- 산업자문 정의
  - 한국교통대학교 전임교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, 직능단체 등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(기술, 경영, 디자인 등) 지원 및 컨설팅 역할 수행
- 산업자문의 분류 : 기술자문, 경영지원, 컨설팅, 디자인 등
- 업무 처리 세부 절차
  - 자문을 희망하는 산업체 또는 산업교원은 자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
  - 자문신청서를 검토(자문목적, 자문범위 및 내용, 자문방법, 자문료)하여 산업자문계약을 체결
  - 자문 실시한 산업교원은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문 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
- 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(시행지침 제7조)

산업교원	산학협력단	비고
90%	10%	산업교원은 전임교원에 한함

### 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#### ■ 산업자문료 기타소득세 적용

- 기타소득세 : 소득금액의 20% 납부
- \* (40%) = (100%) - (60%)
- \* 20% ( ) 8.8%
- \* 15,000,000
- .( - 2020 42%)

#### ■ 교원 업적평가 반영

- 산업자문은 산학협력단이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징수한 실적에 대하여 백만원 당 20점을 인정하며, 임금일 기준으로 적용(산학협력단 인정분에 한함)

[참고 1]

## 〈관련 규정〉

(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)

### 제4조(자문 계약)

①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자문신청서(별표 1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의하여 자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산업자문계약(별표2)(이하“계약”이라 한다.)을 체결할 수 있다.

1. 자문목적
2. 자문범위 및 내용
3. 자문방법
4. 자문료

③자문을 실시한 산업교원은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 자문 결과보고서(별표 3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문 계약해지) ①산학협력단 또는 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.

1. 산업교원이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3. 자문료를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
4. 당사자간 상호협의를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6조(자문료 납부) ①산업체 등은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자문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

제7조(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자문료는 산업교원에게 90%를, 산학협력단에 10%를 배분한다.

②납부된 자문료는 매년 6월말, 12월말에 정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단, 별도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)

제8조(실적평가반영) 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「한국교통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」에 따라 승진임용 및 재계약임용시실적 등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다.